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46호)

2026. 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과	3
2.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 완화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7. 14.

3. 회 부 일 : 2026.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세척·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면 이동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가축사육 현장에서는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의 관리·운반·출하 등에 종사하는 고용인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방역의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방역조치 이행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한편, 제3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지역 내 예찰 대상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이동제한 조치 등이 적용되어 농가의 신고 및 협조 유인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방역 자원의 배분 또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명확히 부과하여 현장 방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위험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축의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의지를 고취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제1항 및 제28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과

개정안은 현행법상 방역기준 준수의무 대상자를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에서 "소유자등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고용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등).

최근 축산현장에서는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운반·출하 등에 종사하는 고용인력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방역기준 준수의무의 수범자를 소유자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실제 방역기준을 이행하는 고용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및 책임 귀속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고용된 사람에 대하여도 방역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여 현장 방역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은 소유자등과 고용된 사람에게 방역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방역기준의 내용은 모두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되어 있음.

따라서 소유자등과 고용된 사람에게 실제로 어떠한 수준의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법률 자체보다는 향후 정비될 하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¹⁾ 상의 방역기준을 살펴보면, 시설 설치·경영적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항(소유자 결정형)과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행 가능한 사항(일상 이행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고용된 사람은 통상 소유자등의 지시·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소유자 결정형 항목까지 고용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실질적 결정권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 통과시 이에 대한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4.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연번	방역기준	세부방역기준	구분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이상 가축 관찰 격리, 신고, 사체 처리 등	일상 이행형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소독조 동결방지조치 등 시설설치	소유자 결정형
		전용복 착용, 출입시 소독 등	일상 이행형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청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소유자 결정형
		예방접종 확인, 세척·소독 등	일상 이행형
4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 관련 준수사항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소유자 결정형
		예방접종 확인, 세척·소독 등	일상 이행형
5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및 요령	-	-

이에 참고할 만한 입법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²⁾의 경우
법률상 영업자와 종업원 모두에게 준수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하
위법령에서는 종업원의 의무를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의
지시사항 이행이라는 범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
서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 5의2.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 5의3.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

연번	구분	준수사항
1	공통사항	작업장 시설·축산물 위생관리, 종업원 위생복장·개인위생 점검, 출입자 통제 등
2	도축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도축검사 신청 확인, 계류기간 준수, 검사관 작업지시 전 작업 금지 등
3	집유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책임수의사 검사업무 독립성 보장, 집유 명목 금품 수수 금지 등
4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작성·보관, 식용 부적합란 폐기 등
5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원료출납서류 등 생산·판매이력 기록·보관, 자가운반차량 가축 운반 금지 등
6	도축업·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종업원 준수사항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의 축산물위생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이행

따라서 향후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시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고용된 사람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 항목에 한정하여 준수 의무를 규정하거나, 소유자등의 지시를 이행하는 형태로 구체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고용된 사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 의무 부과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하위법령에서 정할 방역기준의 내용도 고용된 사람이 이행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으

며,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농가의 책임으로 이어져 보조사업 제한 등 농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최근 축산현장에 외국인 종업원 등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로부터 병원체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종업원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현행	개정안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u>소유자등은</u>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 ----- -- <u>소유자등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은</u>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생략)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제1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 ----- ----- -----.
1. ~ 5의9. (생략)	1. ~ 5의9. (현행과 같음)
5의10.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u>준수하지 아니한 자</u>	5의10. ----- ----- <u>준수하지 아니한 자(가축의 소유자등에 한정한다)</u>
5의11.·6. (생략)	5의11.·6.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③ ----- -----

2.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 완화

개정안은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서만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준용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현행법은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이동제한, 반출금지 등 방역조치를 원칙적으로 준용하되,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른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동제한(제19조제1항제1호)에 대해서만 준용을 배제하고 있음.

【 제3종 가축전염병이 준용하는 방역조치 】

준용조항	방역조치 내용
제19조제1항제1호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발생지역과 가까워 전파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을 격리·억류하거나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제19조제2항	병원체 전파·확산 우려가 있는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을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제19조제3항	감염 우려가 있는 가축에 대한 일정 기간 방목 제한(단, 차단시설·장비를 갖춘 경우 방목 허용 가능)
제19조제4항	제1항제1호 위반 등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한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 가축사육제한명령
제19조제8항	제1항제1호에 따른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도축업 영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6개월 이내)

그러나 제3종 가축전염병은 지역 내 예찰 대상 질병으로서 제1종·제2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제1종·제2종과 유사한 수준의 이동제한 등 일률적 방역조치가 적용되고 있어, 농가의 신고 및 방역 협조 유인이 저하되고 한정된 방역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조치의 강도를 질병 위해도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방역조치 준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위험도 평가의 위임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은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 준용을 원칙에서 예외로 전환하면서, 그 준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 판단기준인 위험도 평가의 대상·절차·발동요건을 법률에는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전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방역조치 준용 여부, 즉 농가에 적용되는 방역조치의 수준이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절차적 사항이 아니라 농가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실질적 전제 요건에 해당함.

따라서 위험도 평가의 최소한의 판단기준이나 고려요소는 법률에 명시하고, 하위법령 제정 시에는 평가지표와 절차를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기준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개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종 가축전염병의 방역조치 완화를 통해 농가의 신고 및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소모성 질병 등의 발생현황 파악 및 적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농가의 방역조치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³⁾

3)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u>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사육농가로 이동하려는 경우 이동제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u>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① ----- ----- -----. <u>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어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준용한다.</u>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의 대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문의처

02)6788-5425